

ISSUE 01

사업장의 환기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언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 사업주의 의무와 자율성의 균형

안전한 작업장이나 작업환경은 자의든 타의든 사업주의 의지나 실행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지만, 어떻게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영역’이다.

사업주의 의무를 포괄적이고 거시적으로 부과하면 사각지대는 감소하지만, 모호성이 증가한다. 사업주의 의무를 세부적이고 미시적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의무조치 사항을 규정하면 명확성은 증가하지만,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규제가 늘어난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규제는 후자에 중점을 둔, 소위 ‘명령-통제형 규제’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 방식은 필연적으로 ‘어떻게’라는 수단과 방법의 사업주 자율영역을 침해한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은 규제정책적 맥락에서 보면 전자에 해당하는 거시적 포괄적 규제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환기시스템 개선을 말하면, 대개 제어풍속이나 필요환기량이 기준치 이상 나오도록 개선하는 기술적 방법을 떠올릴 것이다. 환기와 관련된 규제가 아직 ‘명령-통제형 규제’의 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제어속도와 필요환기량이 제대로 나오게 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기술적 자문을 받으면 방법을 금방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것을 몰라서 환기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글도 그러한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닐 것이다.

박두용

한성대학교 대학원장



환기시스템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업장 작업환경관리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즉 작업환경이나 유해물질의 발생특성으로부터 환기시스템만 떼어 놓고, 그 자체의 법적 기준이나 성능 기준을 잣대로 환기시스템 개선을 논하는 것은 강의실이나 연구실 또는 실험실에서 할 일이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다.

사업장에서 환기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는 작업장의 유해물질 농도를 안전 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작업장의 유해물질 농도는 환기시스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유해물질의 발생률과 밀폐, 대체, 청소, 작업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에 의한 관리의 총체적인 결과다. 작업환경 중 유해물질 농도가 충분히 낮다면, 제어풍속이나 필요환기량이 부족하더라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사업장 환기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이것이 '사업주의 의무'라는 산업보건 거시정책이 중요하다. 이에 못지않게, 어떻게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업주의 (자율)영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업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기시스템의 중요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일부는 끊임없이 비산되거나 기화되어 공기를 오염시키므로 반드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 설치에 끝나지 않고 정말로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유해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배출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업주가 이런 고민을 할 때, 비로소 환기시스템의 '유무'가 아닌 '효과'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그때부터 환기시스템 개선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그 시기가 왔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사례는 2022년 6월 27일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급성 독성 간염 사례였다. 이 사건에는 첫 번째 기소 사례라는 점보다 더 큰 의미가 숨어 있다. 인근의 또 다른 업체도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한 물질로 급성 독성 집단중독 사례가 나타났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피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여부를 가른 중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소배기시스템의 '유무'였다. 위의 사건은 국소배기시스템의 '유무'에 방점을 두었지만, 최근 실행과 이행, 즉 작동성 여부를 중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의 경향을 보면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직업병이 발생하면 환기시스템의 유무보다는 효과가 처벌 여부 및 수준을 판가름 짓는 잣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관리, 교육, 위험성평가, 보호구 지급은 물론 환기시스템도 '있다, 없다' 또는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효과가 있다, 없다' 또는 '효과가 크다, 작다' 등으로 관점을 바꿔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단순하게 환기시스템 성능만 점검하던 산업보건 전문가나 실무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 환기에 대한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단순 기준 충족 여부가 아니라 환기시스템을 개선하려면 공학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컨설팅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업주가 작업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여 모든 작업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략과 정책을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그 전략과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점은 이미 증명된바, 이제 이것을 서류작업이 아닌 현장의 실질적 안전과 환경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